



# 시 보



제1641호 2024. 4. 23.(화)

## 공 고

-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 2
- 공인 등록 공고----- 8
-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 9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## 「목포시 물품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목포시 물품관리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4. 22.

### 목 포 시 장

#### 1. 개정 이유

- 상위법령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일부 개정에 따른 주요 물품 현황 공개에 대한 개정내용 반영
- 행정안전부의 ‘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’에 따라 소모품, 비소모품 가격 기준 반영

#### 2. 주요 내용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운영상황의 공개 등) 개정에 따라 ‘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’ 신설(안 제 35조)
- 행정안전부의 ‘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’에 따른 소모품, 비소모품 가격 기준 반영하여 [별표 1]의 취득단가 기준을 ‘10만원’에서 ‘50만원’으로 변경

○ 조례 절 번호 순서 오기에 따른 ‘제5절 검사 및 인계’ 를 ‘제4절 검사 및 인계’ 로 변경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련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(감사실) : 원안 동의
- 규제심사 대상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 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여성가족과) : 해당 없음

7. 예산사항 : 해당 없음

8. 입법예고 : 2024. 4. 22. ~ 5. 13.(21일)

9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 없음

10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2일까지 목포시장(회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 : 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회계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81), 직접방문 등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회계과(☎061-270-856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앞에 절 번호 “제5절”을 “제4절”로 개정한다.

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(물품 운영상황의 공개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[별표1] 품종 구분기준의 비품과 소모품의 “취득단가 기준 10만원”을 “취득단가 50만원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<신·구조문 대비표>**

현 행	개 정 안
<p align="center"><u>제5절 검사 및 인계</u></p> <p align="center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[별표1]</p> <p>○품종구분 기준</p> <p>(1) 비 품 -①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②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<b>10만원</b> 이상의 물품</p> <p>(2) 소모품 - ① ~ ③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④ 내용연수가 1년이상 으로 취득단가가 <b>10만원</b> 이하의 물품으로서 사용 에비례 소모, 파손되기 쉬운 물품</p>	<p align="center"><u>제4절 검사 및 인계</u></p> <p align="center"><u>제35조(물품 운영상황의 공개)</u></p> <p align="center"><u>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</u></p> <p align="center"><u>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</u> <u>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</u> <u>액, 그 밖에 물품 운영에 관한</u> <u>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</u> <u>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[별표1]</p> <p>○품종구분 기준</p> <p>(1) 비 품 -① (현행과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② ----- ----- -----<b>50만원</b> -----</p> <p>(2) 소모품 - ① ~ ③ (현행과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④ ----- -----<b>50만원</b> ----- -----</p>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 : 목포시 물품관리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\_\_\_\_\_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 \_\_\_\_\_

○ 전 화 번 호 : \_\_\_\_\_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## 공인 등록 공고

목포시 공인조례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따라 등록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사 유 :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
2. 등록일 : 2024. 4. 16.(화)
3. 공인명 및 인영

구분	공 인 명	인 영	규격, 서체	비 고
등록	목포시대중교통과 세입세출외현금출 납원인		1.8cm*1.8cm 푸른전남체	대중교통과

2024년 4월 17일

목 포 시 장

## 「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04. 22.

목 포 시 장

### 1. 개정이유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여유자금 고금리 예치 의무,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강화 규정 추가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고금리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(안 제5조)

-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치 의무 명시

#### 나.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강화(안 제7조)

-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심의
- 통합기금 금융기관 예치현황 보고 및 위원회 활동 관리

#### 다. 관계규정 제명변경반영(안 제11조)

- 「목포시재무회계규칙」을 「목포시회계관리에관한규칙」으로 변경

### 3. 개정안 : 붙임

### 4. 신.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### 5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### 6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 분석평가(여성가족과) : 해당없음

### 7. 입법예고 : 2024. 04. 22. ~ 05. 14.(22일간)

### 8. 의견제출

-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14일까지 목포시 기획예산과(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나. 의견제출처 : 우)58613,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(용당동) 목포시청 기획예산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78), 직접방문 등

### 9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기획예산과(☎ 061-270-3483, FAX 270-357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기금”을 “통합기금”으로 하고, “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”를 “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” 한다

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4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③ 제②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

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

제11조 중 “「목포시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2]

<신·구조문 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.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</p>	<p>제7조(기금의 운용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치현황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 1. 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실적 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 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</p>
<p>제11조(관계 규정의 준용)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「목포시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	<p>제11조(관계 규정의 준용) ----- ----- ----- ----- 「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.</p>